

「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
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시민 권익과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규정 삭제(안 제1조~제3조)
-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~제9조)
-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개정(안 제10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, 「정신건강복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우리 시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
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규정,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
제한 관련 규정,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부분을 행정안전부의
「기획정비과제 정비기준」 등에 따라, 다수의 자치 법규를 일괄
개정하여 입법 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려는 본 조례안에
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